






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제922호 2023. 7. 26.(수)

선기관의 장결

고 시			
		E로명주소 고시	
공 고	]		
거창군 공고	제2023-1170호	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	`
거창군 공고	제2023-1171호	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4	
거창군 공고	제2023-1172호	입업에고	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

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3 - 97호

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 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7. 26.

거 창 군 수

#### 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2065-45 등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	(별	도 열 람)		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# 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3 - 98호

# 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)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26일

# 거 창 군 수

1. 고시일자 : 2023. 7. 26.

2. 고시방법: 거창군보, 거창군 홈페이지, 게시판
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/ [붙임]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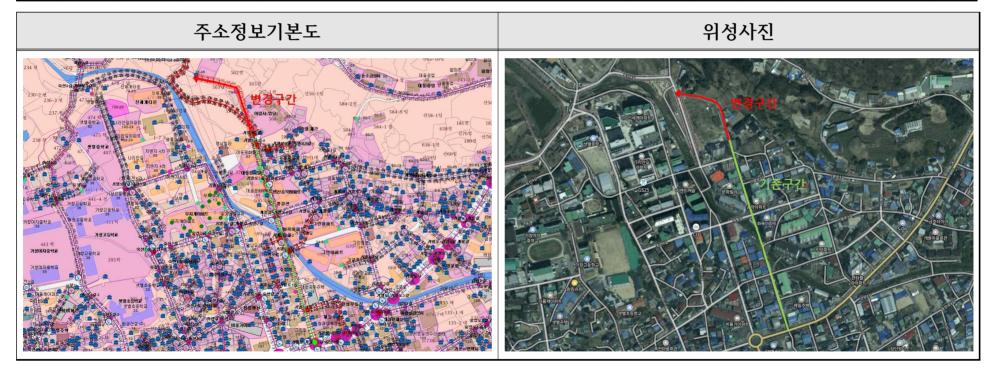
※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

# 4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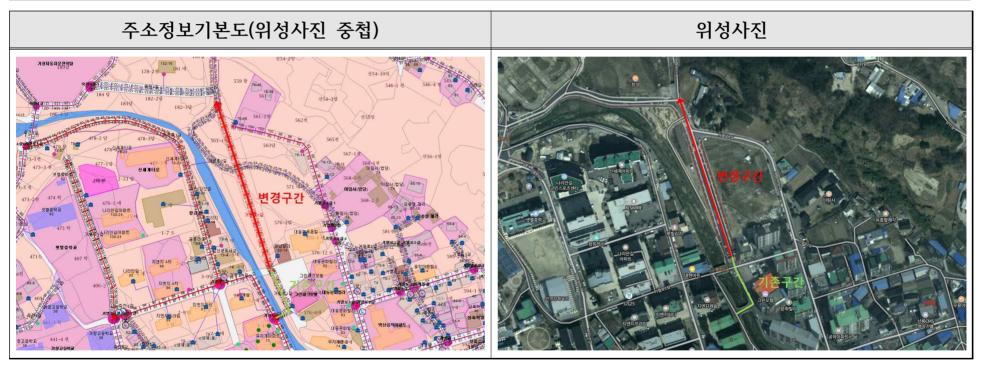
- 도로구간의 변경·폐지는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7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도로구간 변경 조서

일련	행정	л н	ㄷㅋਜ਼	도로	구간	조아서 건물		사물	ㄷㅋㄱ카 배커 기 <b>0</b>	טו ד
번호	구역	구 분	도로명	시작지점	끝지점	중앙선	번호	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이 꼬
1		변경 전	거열로2길	거창읍 대동리 683-1 (거열로2길 1)	거창읍 대동리 576-1 (거열로2길 76)	도면참조	1.0	OJ 0	ㅈㄱ가 제서(d <b>.t.</b> )	x1 71
	거창읍	변경 후	거열로2길	거창읍 대동리 683-1 (거열로2길 1)	거창읍 대동리 559-2 (거열로2길 108)	도면참조	16	없음	주구간 생성 <mark>(연장)</mark>	직권



일련	행정	- H	도크먼 도로구간		<b>X</b> 0] 1]	건물	사물	E 7 77	H H 110	n1 ¬	
번호	구역	구 분	도로명	시작지점	끝지점	중앙선	번호	주소	노도구간	변경 사유	비고
2	71 7L O		거열로1길	거창읍 중앙리 3-1 (거열로1길 62-1)	거창읍 대동리 506-19 (거열로1길 62-14)	도면참조	4	OJ 0	조소 기가	개서 <b>(여자)</b>	직권
Z	거창읍		거열로1길	거창읍 중앙리 3-1 (거열로1길 62-1)	거창읍 대동리 559-2 (거열로1길 62-48)	도면참조	4	없음 	古古十七	생성 <mark>(연장)</mark>	(각전



거창군 공고 제2023-1170호

# 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
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## 2023년 7월 21일

# 거 창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: 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」
- 2. 개정이유: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·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(안 제4조의 2 신설)
  - O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공공 발주공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강화
    -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: 공동도급 49%, 하도급 70% 이상
- 나. 분할 발주 등 규정 신설(안 제3조의 3)
- 다. 불필요한 조문 삭제 (안 제12조, 안 제14조)
  - O (안 제12조)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
  - O (안 제14조)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 사항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건설교통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나.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- 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55-940-3529), 이메일(chanung@korea.kr)
- 라. 제출기한 : 2023. 8. 11.(금) 18:00까지 도달
- 마. 제출주소 : (우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건설교통과)
- 바. 문의전화: 055-940-3533

####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
- 2. 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」일부개정안 1부.
- 3. 관련법령 1부. 끝.

# [붙임 1]

#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	조	례	명	: ブ	· 하군	지역건설산업	활성화 촉진	<u>l</u> 조례	일부개정	조례
--	---	---	---	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고

## [붙임 2]

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조의2(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

- ① 군수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 2항 본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이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.
- 제3조의3(분할발주 등) 군수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여 부를 검토하고, 분리발주 할 수 있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선 생	제3조의2(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체 등 참여 권장) ① 군수는 「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 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 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 트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려는 경우 지역건 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
<신 설>	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 ③ 군수는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참여 및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. 제3조의3(분할발주 등) 군수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, 분리 발주 할 수 있다.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#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- **제29조(공동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 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 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)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 5. 22., 2018. 12. 24.>
 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3. 5. 22.>
  -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·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. <개정 2013. 5. 22.>
  -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 5. 22.>

[전문개정 2009. 2. 6.]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제77조(공사의 분할계약 금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4. 11. 24., 2015. 8. 19., 2017. 7. 26.>
  - 1.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
  - 2.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(工區)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
  - 3. 공사의 성격상 공종(工種)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·안전·공 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 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
    - 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

- <u>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</u> 는 공사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·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1. 24.>
-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4. 11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·군·구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4. 11. 24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0. 7. 26.]

- 제88조(공동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,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 11. 20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.
  -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허가·신고·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허가·신고·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1. 20.>
  -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3. 11. 20.>
  -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1. 20., 2015. 8. 19., 2022. 9. 20.>
  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11. 20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1. 20.>

[전문개정 2010. 7. 26.]

○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

### 1. 입찰공고

라.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%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. 다만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%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.

#### 거창군 공고 제2023 - 1171호

#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23년 7월 26일

# 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

# 2. 개정 이유

○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반영 및 관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조항 반영

# 3. 주요내용

# 가. 관사 운영비 정비(안 제48조)

- 사용자부담 원칙 : 관사의 운영비(전기, 수도,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)
- 예외적 예산지출 :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,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의 보수비,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·가전·기계 등의 설치·교체비,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

# 나. 물품의 구분 별표3 수정(안 제55조)

○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소모품에 대한 기

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

- 1.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를 10만원 미만의 물품 에서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
- 4. 예고기간 : 2023. 7. 26.(수) ~ 8. 15.(화)

# 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재무과장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  - 주소 : (우 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거창군청(재무과)
  - 전화번호 : 055) 940-3262 / FAX : 055) 940-3219

# 6. 기 타

-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【☎(055)940-3262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  - 2.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일부 개정안 1부.
  - 3. 관계법령 1부. 끝.

#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  - 성 명(단체명):
  - O 생년월일(등록번호):
  - O 주 소:
  - O 연 락 처 :
  -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입법예고내용	의	견	用	고

##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8조(관사 운영비) ① 관사의 운영비(전기, 수도,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한한다)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.
- 1.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
- 2.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·가전·기계 등의 설치·교체비
- 3.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과사 우여비) 과사이 우여비느 사유자	제48조(관사 운영비) ① 관사의 운영비(전기,
	수도,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
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	포한한다)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
있다.	한다.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
계기구 설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 · 조경시설비	
<u> </u>	1.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
	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
<del></del>	있는 경우 보수비
	2.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·가전·기계 등의 설
<u> </u>	<u>치·교체비</u>
4. 가스 사용료, 보일러 운영비(1급、2급 관	3. 그 밖에 화재보험료 등 주택 관리비
사에 한한다)	
5. 공동주택 관리비(1급 · 2급 관사에 한한다)	
6. 응접세트,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	
용(1급 · 2급 관사에 한한다)	
7. 주차비,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, 그 밖의 유	
지관리에 따른 경비(1급、2급 관사에 한한다)	

#### [별표 3]

# 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(제55조 관련)

#### 1. 물품의 종류

- (1)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.
- (2)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#### 2. 품종구분 기준

- (1) 비 품
-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
-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
- (2) 소모품
-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
- (예 : 약품, 유류, 수선용 재료 등)
-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(예: 시험용품, 사무용품, 공구 등)
- ③ 다른 물품의 수리, 완성제작(생산)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(예 :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 등)
-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<del>10만원</del>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, 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

## 3. 물품상태 분류기준

- (1)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
- (2)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
- (3)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
- (4)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
# 관계법령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유재산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- 2. "물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(動産)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.

가. 현금

나. 유가증권

#### 다.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

- 3. "기부채납"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관리"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、운용과 유지、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5. "해당 지방자치단체"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- 6. "처분"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, 교환, 양여(讓與), 신탁,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사용허가"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대부계약"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·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9. "변상금"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·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(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 ·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무단점유자"라 한다)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

**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**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"행정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#### 1. 공용재산

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,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</u>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. 공공용재산

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3. 기업용재산

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4. 보존용재산

법령·조례·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

③ "일반재산"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.

**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(定數)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8조(불용품의 양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- 1.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
- 2. 민방위용,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
- 3.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
- 4.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
- 5.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
- 7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
-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
-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5조(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58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, 정수의 책정및 배정, 내용기간(耐用期間),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

② 지방자지단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수 없으며,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. 제92조(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- 1.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 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
- 2.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
- 3.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

제79조(불용품의 양여)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"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- 1. 국가
- 2. 다른 지방자치단체
- 3.「지방자치법」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
-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
- 5.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、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8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- 9.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
- 10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-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물품으로 한정한다.
- 1.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
- ③ 삭제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.
- 1. 양여받는 자의 명칭 성명(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- 2. 물품의 분류번호,품명,규격,수량 및 가액
- 3. 물품의 사용 경위
- 4. 물품의 상태
- 5. 무상양여하는 사유
- 6. 계약서 및 수령증

제92조(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 나 처분할 수 있다.

- 1.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 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
- 2.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
- 3.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

#### □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

#### 2. 관리대상 물품

- 다.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
- 1) 소모품
- 소모품의 정의
-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또는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않은물품
-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없는 물 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50만원 미만인 물품
- 소모품의 종류
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등-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등- 다른 물품을 수립.조립. 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

재료, 건축자재 등

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소액의 물품 ※ 단, 내용연수(조달청고시, 제2021-41호)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(예: 휴대전화기 등)

#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2023년 7월 26일

# 거 창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
- 2. 개정 이유
  - 물품(관리전환·무상양여) 합의서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- 3. 주요내용
  - 규칙 제34조(관리전환 등) 별지 정비
    - 1) 오류사항 정비(안 별지제31호)
    -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→ 관리전환의 조건
    - 인수자 → 인계자
    - 인수관서의 장 → 인계관서의 장
    - 물품관리원 → 물품출납원
- 4. 예고기간 : 2023. 7. 26.(수) ~ 8. 15.(화)
- 5. 의견제출
  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재무과장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- 주소 : (우 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거창군청(재무과)
- 전화번호 : 055) 940-3262 / FAX : 055) 940-3219

# 6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【☎(055)940-3262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  - 2.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 1부.
  - 3. 관계법령 1부. 끝.

#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
  - 성 명(단체명):
  - O 생년월일(등록번호):
  - O 주 소:
  - O 연 락 처:
  -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입법예고내용	의	견	비 고

거창군 규칙 제 호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물품 ( 관리전환 ) 합의서

①( )을 하고자 하는 기관										
②지방자치단체명		③소관7	]관명	명						
⑤정부물품분류번호	⑥품명	⑦규격	⑧단위	9수량	⑩금액	①물품의 상태	①비고			
⑬ ( 관리전환 ) <mark>을 될</mark> ⑬ 무상잉여 <b>의</b> 2	일 <u>요로 하는</u> 조건									
④ ( 관리전환 )을 <sub>끝</sub> 사유	필요로 하는									
상기 물품을 인계	합니다.									
		20 .								
	<del>인</del> -			· <mark>계</mark> 관서의	장		(인)			
			Ē	물품관리관	· 직·성명		(인)			
		물	<del>돌관리관</del> 를	呈품출납원	직·성명		(인)			
	15(	)	)을 받고저	사 하는 기	]관					
⑥지방자치단체명		⑰소관フ	]관명		[8회계]	명				
(B)( )받은 후	20물금	등의 분류								
⑲( )받은 후	21)물품	품의 용도								
상기 물품을 <del>인계</del>	<b>인수</b> 합니다									
		20 .								
		인	수자 : 인	수관서의	장		(인)			
				물품관리관			(인)			
		물	<del>물관리관</del> 를	물품출납원	직·성명		(인)			

(주)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

#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21.

# 거 창 군 수

- 1. 사업지구의 명칭: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/ 영승,양지,수옥지구
- 2. 사업시행자 : 거 창 군 수
- 3.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: 653필, 333,900.9㎡
- 가. 영승지구 : 마리면 영승리 204-1번지 일원 / 239필, 107,904.9㎡
- 나. 양지지구 : 신원면 양지리 101-1번지 일원 / 305필, 190,419.3㎡
- 다. 수옥지구 : 신원면 양지리 40-2번지 일원 / 109필, 35,576.7m²
- 4. 지적확정조서 : [붙임] 참조
- 5. 공람기간 : 2023. 7. 21. ~ 2023. 8. 4. / 14일간
- 6. 공람장소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
- 7. 공람 비치서류
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- 8. 문의처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(055-940-3322)

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